

**2023년도  
제1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 2023년도 제1회 임시 이사회 회의록

의결일시 : 2023. 3. 27(월)

의결방법 : 서면의결(정관 제17조)

상정안건

○ 제1호 의안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제2호 의안 : 재단임원 재선임 제청안

○ 제3호 의안 :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참여 이사 : 재적이사 11명중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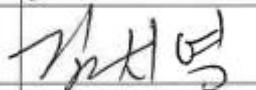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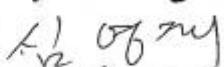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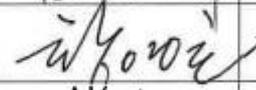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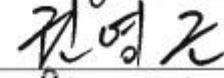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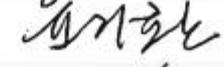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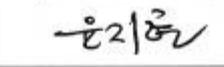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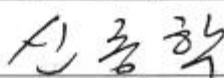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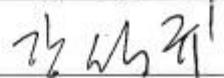
의결결과 : 의결참여 이사 전원 찬성(원안의결)

○ 이사회 의결서 : 불임

이사 발언요지 : 특이사항 없음

< 불임 > 2023년도 제1회 임시 이사회 의결서 1부

# 2023년도 제1회 이사회 심의·의결서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호 의안 : 재단임원 재선임 제청안 제3호 의안 :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주요내용	<p>(제1호 의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액 : 101억 3,109만원    • 지출액 : 94억 7,635만원</li> <li>세계잉여금 : 6억 5,474만원</li> </ul> <p>(제2호 의안) 재단임원 재선임 제청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6명) : 윤기환, 권순중, 윤지현, 신종학, 윤호정, 강석규 (임기 : 2023. 5. 1 ~ 2026. 4. 30)</li> <li>감사(1명) : 진성환(임기 2023. 7. 5 ~ 2025. 7. 4)</li> </ul> <p>(제3호 의안)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li> <li>숙박비-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li> </ul>			
의결결과	원안가결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제3호 의안 위와 같이 의결함. 2023년 3월 27일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비 고
이 사 장	김 학 홍	가		
대표이사	김 치 영	가		
이 사	심 영 재	가		
"	황 영 호	가		
"	권 영 근	가		
"	윤 기 환	가		
"	권 순 중	가		
"	윤 지 현	가		
"	윤 호 정	가		
"	신 종 학	가		
"	강 석 규	가		

【붙임】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1
----------	---

제출일자 : 2023. 3. 27

제 출 자 : 이 사 장

## 1. 제안이유

- 20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재단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2. 부의근거 :** 경상북도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2조, 재단 정관 제27조

## 3. 주요내용

### □ 결산총괄

- 예산현액 : 100억 2,795만원
- 수입액 : 101억 3,109만원
- 지출액 : 94억 7,635만원
- 세계잉여금 : 6억 5,474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762만원은 추후 교부기관에 반납
  - 명시이월금 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912만원은 2023년도로 이월

### □ 세입결산

- 수입액은 101억 3,109만원으로, 예산현액 100억 2,795만원보다 1억 315만원(1.0%)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음.

### □ 세출결산

- 지출액은 94억 7,635만원으로, 예산현액 100억 2,795만원 대비 94.5%를 집행하였고, 예산 집행잔액은 5억 5,160만원임.

### < 기관별 세입·세출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세 계 잉 여 금		
		수 입	지 출	세 계 잉 여 금	명 시 이 월 금	보 조 금 집 행 잔 액	순 세 계 잉 여 금
계	10,028	10,131	9,476	655	8	358	289
사 무 처	499	499	457	43	8	0	35
청 소 년 수 련 원	3,234	3,240	3,173	67	0	7	60
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2,808	2,808	2,487	321	0	254	67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1,158	1,158	1,113	45	0	30	15
청 소 년 성 문 화 센 터	310	351	309	43	0	0	43
아 동 청 소 년 쉼 터	923	923	855	67	0	59	8
청 소 년 남 자 쉼 터	451	451	450	0	0	0	0
북 부 성 문 화 센 터	645	701	632	69	0	8	61

### □ 재무상태(2022.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자 산 액	부 채 액	자 본 액	비 고
계	4,485	622	3,863	
재 단 사 무 처	349	16	333	
청 소 년 수 련 원	2,760	7	2,753	
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611	468	143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67	57	10	
청 소 년 성 문 화 센 터	86	3	83	
아 동 청 소 년 쉼 터	121	59	62	
청 소 년 남 자 쉼 터	369	1	368	
북 부 성 문 화 센 터	122	11	111	

※ 회계감사(2023. 2.16~2.17, 호산공인회계사 147호 감사반 공인회계사 문권식) 결과 : 적정함.

### □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1부(별책)

# 재단 임원 재선임 제청안

의안 번호	2
----------	---

제출일자 : 2023. 3. 27

제 출 자 : 이 사 장

## 1. 제안이유

재단 위촉직 임원의 임기만료(이사 : 2023. 4. 30, 감사 2023. 7. 4 만료) 도래에 따라 재선임(연임)할 임원을 제청

## 2. 주요내용

### 가. 임기만료(7명)

- 위촉직 이사(6명), 임기 : 2020. 5. 1 ~ 2023. 4. 30(3년)
- 위촉직 감사(1명), 임기 : 2021. 7. 5 ~ 2023. 7. 4(2년)

### 나. 재 선 임(7명)

- 위촉직 이사(6명)
  - 대 상 : 윤기환, 권순중, 윤지현, 신종학, 윤호정, 강석규
  - 임 기 : 2023. 5. 1 ~ 2026. 4. 30(3년)
- 위촉직 감사(1명)
  - 대 상 : 진성환
  - 임 기 : 2023. 7. 5 ~ 2025. 7. 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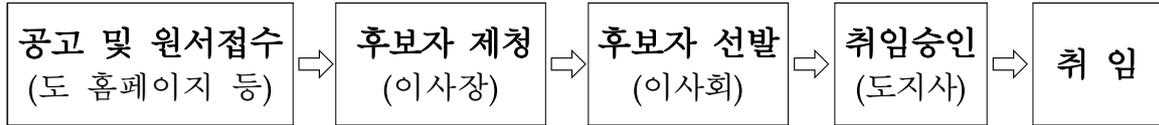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법인해산이 될 수 있음.

## 3. 관련근거

: 정관 제11조제1항

#### 4. 참고자료(지방출자출연법, 조례, 정관 등 관계규정)

- 선임방법 및 절차 : 공개모집



- 임 기

- 이사 3년(연임 횟수는 제한없음)
- 감사 2년(연임 횟수는 제한없음)

- 자격요건

- 청소년육성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회계 또는 세무분야 전문가

#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3
----------	---

제출일자 : 2023. 3. 27.

제 출 자 : 이 사 장

## 1. 개정이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상향조정(안 제10조제3항)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안 별표)

- 서울특별시 : 70,000원 ⇒ 10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80,000원

- 그 밖의 지역 : 50,000원 ⇒ 70,000원

## 3. 개정규정안 : 붙임참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2) 의견수렴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 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제2호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부 칙

이 규정은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1박당)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서울특 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 원, 그 밖의 지 역 50,000원)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서울특 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 원, 그 밖의 지 역 70,000원)